선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문대학교 (이하 '대학' 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자(학생연구자, 위촉연구자 등 포함), 행정지원인력 등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3조(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본교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시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학문교류

제7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학술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부실학술지 투고나 부실학술대회 참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9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①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대학은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학술활동 예방) ① 연구자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② 본교 교원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국외 학회참가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실학회 또는 학술지에 대한 사전 점검리스트와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1.「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안대책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절차은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홍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소속 기관의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은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제14조(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15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등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기관, 그 밖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

제18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 법률 및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는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실험

제19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감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고통완화 및 환경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기하거나 축소함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대학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본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21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자원(인적·물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22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25조(연구윤리 교육)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등의 연구윤리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선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폐지한다.

[붙임1]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

1. 연구과제 일반사항 (연구계획서 기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연구비		

2. 신청목적(해당란에 V 표시): ①과제 참여연구원 □ ②과제 전문가활용 □

3.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4.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하는 < > 란에 V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눈문 작성과 무관) < >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눈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5.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이 역할 및 활동 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 첨부

상기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연구원 신청 시)**

상기 특수관계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과제 전문가활용 신청 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소속부서(학과)장: (서명/인)

붙임 1. 학위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연구실적 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끝.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귀하

[붙임2]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table>
<tr><td rowspan="6">연구과제
개요</td><td>과 제 명</td><td colspan="4"></td></tr>
<tr><td>연구기간</td><td colspan="4"></td></tr>
<tr><td>연구책임자</td><td colspan="4">(성명) (소속) (직위)</td></tr>
<tr><td rowspan="2">연구비
지원</td><td>(지원기관명
)</td><td></td><td>(지원액)</td><td>원</td></tr>
<tr><td colspan="4">※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음</td></tr>
<tr><td>참여연구원</td><td colspan="4">-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원)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원)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원)</td></tr>
<tr><td rowspan="2">특수관계인의
유형</td><td colspan="2">가족(4촌 이내)</td><td colspan="2">미성년자</td></tr>
<tr><td>☐ 배우자
☐ 기타</td><td>☐ 자녀</td><td>☐ 지인 자녀
☐ 기타</td><td>☐ R&E 프로그램
참여자</td></tr>
<tr><td rowspan="3">특수관계인과
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td><td colspan="2">학술대회 (Conference)</td><td colspan="2">학술지 (Journal)</td></tr>
<tr><td>☐ 국내</td><td>☐ 국외</td><td>☐ 국내</td><td>☐ 국외</td></tr>
<tr><td colspan="2"><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발표논문명: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참여저자:</td><td colspan="2"><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논문명:
- 논문 투고 예정일:
- 참여저자:</td></tr>
<tr><td>특수관계인
저자포함
사유</td><td colspan="4">※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논문 공저를 위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오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인)</td></tr>
</table>

[붙임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특수관계인의 지식재산권 발명자 참여 신고서

1. 발명의 개요

발명의 명칭				
연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공동출원인	※ 기관내부 외 외부발명자가 있을 경우, 외부발명자의 소속 기재			
발명자정보	**발명자명**	**소속(기관명/부서)**	**지분(%)**	**연구책임자와의 특수관계여부**
				(Y / N)
				(Y / N)
				(Y / N)
	※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 기재			

2. 발명의 요약

※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발명의 컨셉을 간략히 기재

3. 특수관계인이 상기 발명의 발명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발명의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증빙자료 필수)

4. 발명자 별 지식재산권 지분 산출 및 확인 내역 (발명자 간 합의 사항)

작성기준(%)

발명자명	연구기획(A)	연구수행(B)	발명자별 총 기여도 (A+B)	서명
각 항목별 합계	**100%**	**100%**	**100%**	

※ 해당 건의 지식재산권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특수관계자 외 공동발명자들에게도 인지 필요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 사실시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귀하

[붙임4] 이해충돌 신고서

이해충돌 신고서

신청인		소속부서	
신고일자		직위	

1. 이해충돌 발생 기간(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

- 20 . 00. 00. ~ - 20 . 00. 00.

2. 이해충돌 발생 기간(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

금전적 이해관계	직무적 이해관계	인적 이해관계	지적 이해관계
□	□	□	□

3. 이해충돌의 내용

이해충돌 대상자 혹은 대상기관	
대상자의 직무	
대상자와의 관계	
이해충돌 내용	※ 이해충돌의 내용의 경우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4. 업무배제신청 여부(O / X)

귀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혹은 발생하여) 업무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를 신청할 경우 소속기관은 신청인을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